

제99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 만료 및 재계약

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 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을 한다.

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가를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반영한다”는 특별 약관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공지 및 안내 후 동의를 얻고 수가 변경을 적용한다.

다. 개인별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본인부담율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반영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공지 및 안내 후 동의를 얻고 수가변경을 적용한다.

라. 개인별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리고 갱신계약서(변경계약서)는 생략할 수 있다.

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 해지 조건

- 가.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다. 생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라. 시설 제반 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마. 배회성,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바.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 사. 생활인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생활인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아.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100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 1/2/4인실 : 식재료비- 1회 4,500원
 - 1/2/4인실 : 간식비- 1일 2회 3,200원
 -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다. 특별 보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급여내역(2025.01.01.~25.12.31.)

기준: 31일,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수가		90,450	83,910	79,240
내역	공단	$90,450 \times 0.8 \times 31 = 2,243,160$	$83,910 \times 0.8 \times 31 = 2,080,968$	$79,240 \times 0.8 \times 31 = 1,965,150$
	본인	$90,450 \times 0.2 \times 31 = 560,790$	$83,910 \times 0.2 \times 31 = 520,242$	$79,240 \times 0.2 \times 31 = 491,288$

*비급여내역

구분		비용(1식)	내역	합계
1/2/4인실	식재료비	4,500	$4,500 \times 3 \times 31 = 418,500$	517,700
	간식	1,600	$1,600 \times 2 \times 31 = 99,200$	

상급침실	1인실A : $88,000 \times 31 = 2,728,000$, 1인실B : $78,000 \times 31 = 2,418,000$ 2인실A : $50,000 \times 31 = 1,550,000$, 2인실B : $40,000 \times 31 = 1,240,000$
기타	이·미용비(전문가초빙), 전동칫솔, 원거리교통비, 화장품, 향수, 이 미용품, 건강기능식품, 개인취미생활용품, 개인 희망에 의한 외부강 사초빙프로그램 제공시, 병원비 및 약제비 등 개인부담

*등급외자는 계약시 당사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101조(이용료의 납부 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달 6일 납부하기로 한다. (6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5501-01-373277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